朝鮮總督府月報및朝鮮彙報

目次索引

大韓民國國會圖書館

朝鮮總督府月報 및 朝鮮彙報目次索引

白 淳 在

<解　題> 여기 收錄하는 朝鮮總督府月報 및 朝鮮彙報는 日帝가 韓國侵略의 實質的 매듭을 지은 1910年 8月 强制的인 韓日合邦 締結後 總督府를 設置하고 植民地政策을 實施해 오는데 重要한 宣傳 表現의 구실을 삼아온 것이다.

따라서 同誌에 對한 究明은 곧 日本의 韓國植民地化政策의 基本的 性格을 理解하는데 必要한 資料라고 볼 수 있다.

朝鮮總督府月報는 1911年 6月 第1卷 第1號로 始作하여 1915年 2月 第5卷 第2號까지 繼續되바 있다.

朝鮮彙報는 1915年 3月 上記의 朝鮮總督府月報를 改題하여 나온 後身으로서 1910年 6月까지 繼續刊行되었다가 爾後「朝鮮」으로 再次 改題되어 發行되어진 것이다.

이와같은 同誌의 性格이나 標榜한 點은 同誌「發行에 關한 規定」속에 明遼하게 나타나있기 때문에 여기에 譯載하여 參考에 붙이고자 한다.

朝鮮總督府月報에 關한 規程

(四十四年五月 總訓第四十一號)

第一條 朝鮮에 있어서 施政 産業 其他 各般의 狀況을 蒐錄하기 위하여 每月 20日 朝鮮總督府月報를 發行한다.

臨時調査事項으로서 큰 分量에 걸치는 것은 月報附錄으로서 이를 發行할 수 있다.

第二條 月報는 總務部文書課에서 이를 編纂한다.

第三條 月報에 揭載할 事項은 아래의 區分에 依한다.

1. 農業及 殖林　　2. 商工業
3. 鑛業　　4. 水産業
5. 貿易　　6. 運輸及交通
7. 理財及 金融　　8. 敎育
9. 社寺宗教　　10. 衛生
11. 救恤慈善　　12. 地方行政
13. 司法　　14. 調査資料
15. 統計

第四條 月報에 記載할 材料는 關係되는 各部及 所屬官署에서 이를 蒐蒐한다.

第五條 材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各部及 所屬官署(道에 있어서는 內務部及 財務部)에 各1名의 月報報告主任을 둔다.

月報報告主任은 奏任官 또는 判任官中에서 所屬長官이 命하고 그 官氏名을 文書課長에게 通知한다.

第六條 月報報告主任은 月報에 揭載할 事項을 調査하였을 時에는 즉시 이를 文書課長에 送付한다.

第七條 月報原稿 마감은 每月 10日로 한다.

第八條 文書課長은 月報揭載事項에 關하여 月報報告主任에게 直接交涉을 할 수 있다.

第九條 月報原稿는 別記樣式의 原稿用紙에 이를 記入할 것. 但 統計 圖表及 印刷에 關한 것은 便宜上 美濃013行罫紙 또는 美濃白紙에 이를 記入 또는 그 印刷物을 美濃白紙에 貼付하여 이를 代用할 수 있다.

第十條 月報는 朝鮮總督府印刷局이 이를 印刷한다. 印刷局長은 依賴에 따라 月報에 廣告를 揭載할 수가 있다. 그 料金은 印刷局長 이를 定한다.

朝鮮總督府에 關한 規程

(大正二年十一月 總督府訓令第五十八號)

朝鮮總督府月報에 關한 規定을 아래와 같이 改正한다.

朝鮮總督府月報에 關한 規程

第一條 朝鮮에 있어서의 施政 其他 諸般의 狀況을 周知시키기 위하여 每月 1日 朝鮮總督府月報를 發行한다.

第二條 月報는 官房總務局總務課에서 이를 編纂한다.

第三條 月報에 揭載할 事項의 槪目은 아래와 같다.

1. 主要記述	2. 調査資料
3. 雜錄	4. 叙任及 辭令
5. 統計	6. 判決例
7. 法令及 通牒	

第四條 月報編纂을 위하여 編纂委員 數名을 둔다. 委員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의 高等官中에서 이를 命한다.

第五條 總務課長은 每月 1回 各編纂委員會를 開催하여 編纂에 關한 打合을 할것.

第六條 月報原稿마감은 每月 15日로 한다.

第七條 月報는 官房總務局印刷所에서 이를 印刷한다.

第八條 月報에는 依賴에 따른 廣告를 揭載할 수가 있으며 그 料金은 印刷所長이 이를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大正三年(1914)一月一日부터 이를 施行한다.

朝鮮彙報에 關한 規程

(大正四年二月 總督府訓令第五號)

朝鮮彙報에 關한 規定을 아래와 같이 大正四年(1915)三月一日 부터 이를 施行한다.

朝鮮總督府月報에 關한 規程은 이를 廢止한다.

第一條 朝鮮에 있어서의 行政及 諸般의 狀況을 널리 知悉시키기 위하여 每月 1回 朝鮮彙報를 發行한다.

第二條 朝鮮彙報에 揭載할 事項의 槪目은 아래와 같다.

1. 叙任及 辭令	2. 行政
3. 財政及 金融	4. 産業
5. 交通及 土木	6. 學事
7. 司法及 警察	8. 硏究資料
9. 外國事情	10. 地方通信
11. 雜報	12. 質疑應答
13. 統計	14. 法令及 通牒
15. 判決例	16. 日本語及 朝鮮語

第三條 朝鮮彙報 編纂을 위하여 編纂委員 數名을 둔다. 委員長은 總務局長이 이를 代身한다. 委員은 朝鮮總督府及 所屬官署의 高等官中에서 이를 命한다.

第四條 委員長은 每月 1回 委員會를 開催하고 編纂에 關한 打合을 해야 한다.

第五條 朝鮮彙報原稿는 每月10日까지 官房 總務局總務課에 送付할것.

第六條 朝鮮彙報에는 依賴에 따라 廣告를 揭載할 수 있으며 그 料金은 따로 定한다.

凡　　例

I. 收錄廣圍

1. 本書의 1篇에는 1911年 6月에 創刊되어 1915年 2月에 終刊된 朝鮮總督府月報 全通卷 45卷의 全目次를 調査收錄하였다.

2篇에는 朝鮮總督府月報가 1915年 3月 朝鮮彙報로 改題 發刊됨을 비롯하여 1910年 6月까지 終刊된 同誌의 全目次를 調査收錄하였다.

2. 本書에는 主로 韓國에 關係되는 것을 위주로 하여 小數의 滿洲關係分도 收錄하였으나 敍任 및 辭令, 法令及通諜 其他 雜錄中 枝葉的인 問題에 걸친것은 省略하였다.

II. 配　列

配列은 發行年代順을 좇아 먼저 朝鮮總督府月報 다음 朝鮮彙報의 順으로 配列하였다.

III. 記述方法

1. 目次와 本文이 日文인것을 이를 編者가 飜譯하여 記載하였다.
2. 目次記述의 順序는 다음의 分類順에 依하여 作成했다.

<朝鮮總督府月報>

1. 書目・解題
2. 朝鮮事情
3. 產業一般
4. 農業
5. 牧畜・養禽
6. 林業
7. 蠶絲業
8. 水產業・鹽業
9. 工業
10. 鑛業
11. 交通・通信
12. 商業
13. 貿易
14. 金融・保險
15. 社會問題・社會事業
16. 農村問題
17. 移植民・人種・人口問題
18. 財政
19. 教育・宗教
20. 政治・行政
21. 司法
22. 歷史・傳記・文化
23. 風俗・習慣
24. 衛生
25. 雜

<朝鮮彙報>

1. 書目・解題
2. 朝鮮事情一般
3. 產業一般
4. 農業
5. 牧畜・養禽
6. 林業
7. 蠶絲業
8. 水產業・鹽業
9. 工業
10. 鑛業
11. 交通・通信
12. 商業
13. 貿易
14. 金融・保險
15. 社會問題・社會事業
16. 農村問題
17. 移殖民・人種・人口問題
18. 財政
19. 教育・宗教
20. 政治・行政
21. 司法
22. 歷史・傳記・學術
23. 風俗・習慣
24. 衛生
25. 雜
26. 滿蒙

3. 本目次의 卷數表示는 朝鮮總督府月報에서는 目次末端에 卷數를 아라비아 數字로 表示했으며 朝鮮彙報도 같은 方式을 取했으나 여기서의 數字表示가 아니고 年月을 表示하였다. (例 3, 6 (大正3年6月))

◎ 9. 工 業

◎ 10. 鑛 業

◎ 11. 交通・通信

◎ 12. 商 業

◎ 13. 貿 易

◎ 14. 金 融 · 保 險

◎ 15. 社會問題 · 社會事業

◎ 16. 農 林 問 題

◎ 17. 移植民·人種·人口問題

◎ 18. 財 政

◎ 19. 敎 育

◎ 23. 風 俗·習 慣

◎ 24. 衛 生

◎ 25. 雜

朝 鮮 彙 報

◎ 1. 書 目·解 題

◎ 2. 朝鮮事情一般

◎ 3. 產業 一般

◎ 4. 農　業

◎ 5. 牧畜·養禽

◎ 6. 林 業

◎ 7. 蠶 絲 業

◎ 8. 水產業·鹽業

◎ 9. 工　業

◎ 10. 鑛　業

◎ 11. 交通・通信

◎ 12. 商 業

◎ 13. 貿　易

◎ **14. 金 融·保 險**

◎ **15. 社會問題·社會事業**

◎ **16. 農 村 問 題**

◎ **17. 移殖民·人種·人口問題**

◎ 18. 財 政

◎ 19. 敎育·宗敎

◎ 20. 政治·行政

◎ 21. 司　法

◎ 23. 風 俗·習 慣

◎ 24. 衛 生

◎ 22. 歷史·傳記·學術

◎ 25. 雜

◎ 26. 滿 蒙